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9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 사항 등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제5호나목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함(안 제9조).
- 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신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조 중 “제38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를 “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전업농어업”을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안 제7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안 제9조 중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38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를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u>”를 “<u>「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u>”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u>”를 “<u>「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u>”로 한다.</p>	<p>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 ----- -.</p> <p><u>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u>을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u>”으로, “<u>후계농어업경영인</u>”을 “<u>후계농업경영인</u>”으로, “<u>전업농어업</u>”을 “<u>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u>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를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u>”로 하고, 같은 호</p>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 하수도 사용 조례 -----

--.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신 설>

례」의 개정) -----

-----.

-----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 조례 관련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너목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9조제9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7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8조제5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전업농어업”을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5조의2제3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3조”로 한다.

제16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4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23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8조제1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